#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군민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에 대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복지관 설치목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복지관의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업 등 사업 수행

나. 복지관 이용 및 제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의 우선 이용 및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의 이용 제한

○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다. 운영비 보조, 위탁계약 및 기간에 관한 사항 등(안 제6조～제9조)

○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 이용자들에게 사용료 징수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면제

○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 가능

라. 수탁자의 의무 및 군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

○ 군수는 시설의 운영상황 및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마. 위탁해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군수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음

**4. 관련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군민의 복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에 대비해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하는 제정하는 조례로서

- 제1조 ~ 3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규정과 두었고,
- 제4조~5조 에서는 복지관의 이용 및 제한과 생활보호 대상자 및 장애인의 우선이용 및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이용 제한 규정을 두었고,

- 제5조 ~14조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수탁자의 의무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기타 관계서류 서류를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사업실적 등에 따라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시에는 말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청소년관련 시설이 없는 우리지역에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문화의집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 예술, 정보, 스포츠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의집 기능 규정(안 제4조)

다. 직영으로 하고 이용대상과 이용방법으로 청소년은 무료, 청소년이외의 자는 허가 후 이용 등 운영방법 규정 (안 제5조～제7조)

라. 천재지변, 개보수 시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전전한 청소년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이용자 제한 규정(안 제8조～제9조)

마. 시설이용에 따른 부주의 등으로 인한 변상규정(안 제10조～제11조)

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규정(안 제12조～제13조)

**4. 관련법률**

「청소년기본법」제8조, 제49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제11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표현과 정보화 능력 함량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운영 조례로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